제 939 호
1982.11.17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편 집 : 공 보 관 전 명 호
전 화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전 화 725-6090

시 보

차 례

◎ 조 례

제 1692 호 : 서울특별시묘지및장제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 3
제 1693 호 : 서울특별시보육시험소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 4
제 1694 호 :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5
제 1695 호 :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조례중개정조례 5
제 1696 호 :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7
제 1697 호 :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9
제 1698 호 :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1
제 1699 호 : 서울특별시새종문화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18
제 1700 호 : 서울특별시립가축위생시험소제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 ... 20

〈이면계속〉

공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제 1701 호 : 서울특별시보건연구소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 20
제 1702 호 :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개정조례 …… 21
제 1703 호 : 서울특별시상주인구조사시행조례개정조례 …… 22
제 1704 호 :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 …… 26

◎ 훈 령
제 584 호 : 서울특별시종합자료실운영규정중개정규정 …… 43
제 585 호 : 서울특별시보고통제규정중개정규정 …… 49

◎ 고 시
제 471 호 :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지적승인 …… 49
제 472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50
제 473 호 :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변경 …… 50
제 474 호 :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 …… 51
제 475 호 : 도시계획시설(시장 백화점)결정및지적승인 …… 52
제 476 호 :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 …… 52
제 477 호 : 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 …… 53
제 478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 …… 53
제 479 호 :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고시 …… 54
제 48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 55
제 481 호 :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 56
제 482 호 : 도시계획사업(백화점)시행허가 …… 56
제 483 호 : 도시계획시설(수도)변경결정 …… 57
제 484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 58

◎ 공 고
제 478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 58
제 479 호 : 환지계획일부 변경공람공고 …… 59
제 480 호 : 환지계획일부 변경공람공고 …… 59
제 483 호 : 환지계획일부 변경공람공고 …… 59
제 484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소행정조치 …… 60
제 485 호 :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찬연기)공람공고 …… 60

◎ 강남병원공고
제 2 호 : 공사설립등기공고 …… 61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제장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년 11 월 25 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692 호

서울특별시묘지및장제장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묘지 및 장제장사용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구　분	내　용	요　금
1. 묘지사용료	○ 일반묘지 : 1 평당 (3.3 ㎡)	2.150 원
	○ 공원묘지 : 반봉분형 1 기당 (8.25 ㎡)	43.000 원
2. 공원묘지 관리비	○ 반봉분형 1 기당	10.000 원
3. 장제장사 용료	○ 대인 (만 13 세이상)	8.500 원
	○ 소인 (만 12 세이하)	4.300 원
	○ 사산아	1.100 원
	○ 유골개장	2.150 원
	○ 적출물 1 건당 (10 킬로그람한)	3.000 원
	○ 납골 (2 년한)	2.000 원

부　　칙

이 조례는 1983 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토목시험소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

◎서울특별시조례제 1693 호

서울특별시토목시험소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토목시험소 수수료 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토목시험에관한 수수료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조례는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에 토목에 관한 시험 또는 조사를 의뢰하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액) 시험 또는 조사의뢰 수수료는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수수료 규정(건설부훈령)에 따른다.

제3조(의뢰) ①시험 또는 조사를 의뢰하고자 하는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수입증지로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의뢰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험을 위한 조사비의 부담) 이 수수료 이외에 시험조사비가 필요한 시험의뢰는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이 자재장비 및 기타 방법으로 산정하는 조사비를 의뢰자가 직접 실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이용의 제한) 의뢰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의 승인 없이는 시험의 결과를 품질보증 선전 기타의 목적으로 외부에 발표 또는 문헌에 공개할 수 없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국고, 시비보조공사와 시장이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수수료 규정에서 정한 수수료 이외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는 연구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3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축산물검사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694 호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축산물검사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축산물위생검사소"를 "종합기술시험연구소"로 한다.

제3조중 별표를 다음과 같이한다.

(별표)

축 산 물 검 사 수 수 료

구 분	종 목	단 위	수 수 료
도 축 검 사	소, 말	두	540 원
	돼지, 양	두	110 원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은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한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 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 1695 호

서울특별시립병원수가 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립병원 수가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1686호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 원 입 장 료

종 별	사 용 기 준	금 액	비 고
일반공원	어른1회당	160원	○단체는 기본요율의 30%범위내에서 시장이 인하 조정할 수 있음.
	어린이1회당	100원	
어린이대공원	어른1회당	400원	○조기산책의 경우는 월당 공원입장료의 10일분을 징수함.
	어린이1회당	150원	

주)

○ 어린이 : 국민학교 학생 및 만7세이상 12세이하의 자 (다만 유희 및 운동시설 사용의 경우는 만4세이상 12세이하인 자)

○ 학 생 : 학생증을 소지한 중, 고등학교의 학생

○ 어 른 : 어린이 학생 및 만6세이하의자 이외의자

○ 단 체 : 30인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인원

(별표1)

공원및공원시설사용료

종 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운동장사용	1회당	명당10원	
상시영리행위 (사진촬영)	1인1년당	100.000	
영화촬영	주간1회당	52.500	야간은 주간의 2배로함
녹 화	1시간	11.000	
	초과시간당	5.300	
야외음악당사용	주간1회당	31.500	야간은 주간의 2배로함
식물원입장	어른1회당	160	
남산공원	학생1회당	100	
〃	어린이1회당	50	
남산공원 차량입장	(1회통과당)		
	버스, 대형화물	650	
	승용, 마이크로버스	440	
	소형화물, 2륜	220	
남산전망대입장	어른1회당	1.100	부가가치세 별도
	어린이1회당	750	〃
남산케이블카	어른편도	530	왕복은 편도의50%가산
	어린이편도	320	단체는 해당액의 30% 범위내에서 인하함.
	통근의 경우 1개월당	3.000	
유희시설 운동시설		입근시설 사용료의 90% 이내에서 시장이 별도로	어린이수영장은 관리운영비범위내에서 정함.

(별표3)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종별	단위기준	금액	비고
운동시설 위탁료	영업목적시	전체수입액의 10/100	
	영업목적이외	당해재산가액의 1/100	
유희시설 위탁료		전체수입액의 10/100	특수유희시설에 대하여는 전체수입액의 10/100 이상의 [illegible] 시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에 의하여 적용할 수 있음.
기타시설 위탁료	연액	인근임대료 추정액의 100/10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유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성배 인

◎서울특별시조례제1697호

서울특별시유질검사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유질검사 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연료시험소(이하 "연료시험소"라 한다)"를 "한국기술시험연구소"로 한다.

제3조중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중 "연료시험소장"을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연구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 험 수 수 료

시 험 항 목	휘발유	등 유	경 유	공해시험용		비 고
				경 우	방카씨유	
옥탄가 측정	15.400					
분류성상시험	880	880	880			
동판부식시험	1.650	1.650	1.650			
증기압측정	800					
비색시험		550	550			
검질측정	2.200					
4에칠납측정	4.400					
인화점측정		880	880			
유동점측정	1.100	1.100	1.100			
수분측정		880	880			
등점도측정			880			
잔류탄소측정			880			
유황분측정	1.650	1.650	1.650	3.500	4.000	
비중시험	550	550	550			
산화안정도시험	1.100					
운점측정		1.100	1.100			
연소시험		880				
전산가			1.100			
회 분			880			
10% 잔류분에 대한 잔류탄소			880			
탁터시험	880	880				
색 (육안)	55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년 11 월 2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698 호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요액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비 고
1. 증 명			
가.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 건	220 원	
나. 병적에 관한 증명			
1) 병적증명	1 〃	60	
2)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원	1 〃	330	
다.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납세증명	1 〃	330	
2) 시세완납 또는 미과세 증명	1 〃	330	
3) 재산세과세증명	1 〃	330	
4) 삭 제			
라. 재산에 관한 증명			
1) 재산평가조서	1 〃	330	
2) 가옥대장등본	1 〃	330	
3) 가옥대장무한증명	1 〃	330	
4) 자산에 관한 증명	1 〃	330	
5)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	1 장	330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비 고
6) 토지건물의 도면·등본	1 장	330 원	
7) 자산관리인과 파산관리인에 관한증명	1 건	330	
8) 삭 제			
9) 가옥대장 및 기타공부, 도면의 열람	1 회	330	
마. 건축에 관한 증명			
1)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	1 건	330	
2) 표준주택설계도서	1 〃	1,650	
바. 직무에 관한 증명			
1) 경력(재직·퇴직)증명	1 〃	330	
2) 운전경력증명	1 〃	330	
사.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1 〃	330	
2) 생산실적증명	1 〃	330	
3) 매장, 화장에 관한 증명	1 〃	330	
4) 실수요자 증명	1 〃	330	
5) 삭 제			
6) 삭 제			
7) 중소기업체 확인원	1 〃	550	
8) 공장저당법 제 7 조 증명	1 〃	330	
9) 시설보유증명	1 〃	330	
10) 원자재(시설재)증명	1 〃	330	
11) (식품, 환경)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1 〃	330	
12)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	1 〃	550	
13) 화재증명	1 〃	550	
14) 소방시설증명	1 〃	550	
15) 공업용 요소 및 실수요자 증명	1 〃	330	
16) 수출용원자재소요량 증명	1 〃	1,000	
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행정구역내의 사실증명			
1) 행정구역 명칭변경증명	1 〃	330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비 고
2) 주소증명	1 건	330	
자. 도시계획에 관한 증명			
1) 삭 제			
2)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 증명	1 필지	440	
3) 경계명시측량(도로, 구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 〃	5,500	
4) 환지예정지 변경신청	1 〃	330	
5) 체비지 분할신청	1 〃	330	
6) 종전토지 불할신청	1 〃	330	
7) 토지대금 완납증명	1 건	330	
8) 도시계획법 제87조증명	1 필지	330	
9) 환지예정지 분할신청	1 〃	330	
10) 도시계획확인원	1 〃	330	
차. 주소 및 신상에 관한 증명			
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증명	1 건	330	
2) 국제결혼증명	1 〃	3,300	
3) 신원증명	1 〃	330	
4) 관보타전의뢰원	1 〃	330	
5) 무적증명	1 〃	330	
6) 제적기재 사실증명	1 〃	330	
7) 거주에 관한 증명	1 〃	330	
8) 부양사실증명	1 〃	330	
9) 외국인등록표 교부신청	1 〃	330	
10) 외국인등록표 재교부신청	1 〃	330	
카. 회계관계증명			
1) 물품납품실적증명	1 〃	330	
2)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하자보증금 확인원	1 〃	330	
3) 일반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증명	1 〃	330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비 고
4) 납품 또는 공사사실증명	1 건	330 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 〃	330	
6) 면세용도 물품 증명	1 〃	330	
타. 자동차에 관한 증명			
1) 자동차 말소 사실증명	1 〃	550	
2) 자동차 제증명	1 〃	550	
3) 자동차 보관장소 확인원	1 〃	330	
파.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 사실증명	1 〃	330	
2) 시영주택분양금 납부증명	1 〃	330	
3) 무허가건물확인원	1 〃	330	
하. 지적에 관한 증명			
1) 지적공부상 미등재 증명	1 〃	330	
2) 지적공부정리완료 증명	1 〃	330	
거. 마약에 관한 증명			
1) 마약재고량 증명	1 〃	330	
2) 마약판매(구입)서 교부신청	1 개	60	
너. 기타 제증명			
1) 삭 제			
2)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	1 건	330	
3) 운전자 채용대상자 사고기록확인서	1 〃	330	
4) 기타 사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증명	1 〃	330	
2.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등			
가. 인허가			
1) 삭 제			
2)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 건	550	
3)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1 〃	550	
4) 도로, 하천부지점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 기타)허가	1 〃	550	
5) 아취 및 육교사용허가	1 〃	550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비 고
6) 공유수면점용허가	1 건	550원	
7)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허가 신청	1 〃	550	
8) 삭　　제			
9) 숙박영업허가증 재교부	1 〃	550	
10) 식품환경영업허가증 재교부	1 〃	550	
11) 공중목욕장 영업허가증 재교부	1 〃	550	
12) 삭　　제			
13)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 〃	550	
14) 입간판설치허가	1 개당	2,000	1년내는
		(1,000)	허가갱신
			수수료
15) 현수막 설치허가	1 〃	5,000	(이하같다)
		(3,000)	
16) 프랑카드 설치허가	1 〃	5,000	
		(3,000)	
17) 에드발룬 설치허가	1 〃	5,000	
		(3,000)	
18) 돌출광고물 설치허가	1 〃	20,000	길이 2 m
		(10,000)	이상 또
			는 조명
			및 전기
			장치부착
			분은 2배
19) 공연광고물 설치허가			
〈허가기일기준〉			
가) 1 - 7 일	1 개당	3,000	
		(1,500)	
나) 8 - 15 일	1 〃	5,000	
		(2,500)	
다) 16-30 일	1 〃	10,000	
		(5,000)	
라) 31 일 이상	1 〃	20,000	
		(10,000)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비 고
20) 전주, 가로등주 이용광고물 설치허가	100개당	10,000 (5,000)	가. 100개미만은 100개로간주
21) 차량이용 광고물 설치허가	100매당	20,000 (10,000)	나. 매100개초과수량은 50에서사사오입.
22) 지하철역 광고물 설치허가	1 개당	10,000 (5,000)	
23) 지하도 광고물 설치허가	1 〃	10,000 (5,000)	
24) 전단공중살포 허가	1 회	20,000	1개월 이내는 5분의1
25) 옥상광고물 갱신허가	1 개당	50,000	
26) 공공시설이용광고 허가	100 〃	10,000 (5,000)	
27)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허가신청	1 건	2,000	
28) 조수수출입 허가 신청	1 〃	20,000	
나. 신고, 신청, 등록, 지정, 확인			
1) 출판사, 인쇄소 등록신고	1 〃	550	
2) 소개영업신고 또는 장소이전 신고	1 〃	550	
3) 이·미용업 개설신고증 재교부	1 〃	550	
4) 이·미용업소(명칭, 주소등)변경신고	1 〃	330	
5) 시유재산대부(계속대부)신청	1 〃	550	
6) 시유재산 매수신청	1 〃	550	
7) 건물증·개축 신고	1 〃	330	
8)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개설신고	1 〃	10,000	
9)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 〃	550	
10) 습관성의약품 원료사용 승인신청	1 〃	330	
11) 습관성의약품 원료양도승인신청	1 〃	330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비 고
12) 독극물관리자 변경신청	1 건	330원	
13) 전자공업등록 및 등록변경신청	1 〃	550	
14) 기계공업등록 및 등록변경신청	1 〃	550	
15)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 〃	550	
16) 토지사용(체비지)승락신청	1 〃	550	
17) 체비지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 〃	550	
18) 체비지 소유자 확인원	1 〃	330	
19) 시영주택(택지)양도, 양수, 소유권이전 해지승인신청	1 〃	550	
20) 시영주택(증·개축)승인신청	1 〃	550	
21) 자가용 자동차 사용신고	1 〃	550	
22) 이륜소형차사용신고 및 이전신고	1 〃	550	
23) 벽보지류 설치신고	100매당	10,000 (5,000)	는신고 정신 수수료 가. 50매 이하공 연광고 체육관배 광고등은 2분의1 나. 비영 리적인것 은 제외 (련배)
24) 전단신고	1 회	5,000	비영리적 인것은 2분의 1

수 수 료 징 수 사 항	수 량	수수료	비 고
25)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	1척당	1,000원	
나) 〃 정원6인이상10인 〃	1 〃	1,400	
다) 〃 정원11인이상20인 〃	1 〃	2,100	
라) 〃 정원21인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1 〃	2,800	
26) 삭 제			
27) 인감(신규, 변경, 개인)신고	1 건	220	
28)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 〃	550	
29) 인장업 신고	1 〃	1,000	
30) 입찰참가신청	1 〃	550	
31) 급수공사신청	1 〃	550	
32) 식품영업신고	1 〃	2,000	
33)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 〃	550	
34) 숙박영업허가사항 변경신고	1 〃	550	
35) 운전면허기재사항 변경신고	1 〃	55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년 11 월 25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699 호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사용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1. 기본시설사용료"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조례는 1983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서울특별시세종문화회관사용료

구분 / 시설명		사용료 (기준액)	비고
강당	대강당	185 원	1. 좌석당 1회 단가임. 2. 오전은 기준액의 55%, 오후는 기준액의 75%, 야간은 기준액으로 함. 3.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은 기준액의 25%를 가산함. 4. 공연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함. 5.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야간(철야포함) 작업시는 야간사용료의 50%로 함. 6. 행사용 대관시의 사용료는 오전, 오후, 야간, 차등없이 1회 좌석당 대강당은 280원, 소강당은 480원, 별관은 265원으로 함.
	소강당	220 원	
	별관	110 원	
회의장	대회의장	335 원	1. 평당 단가임. 2. 오전 및 오후는 기준액의 50%를 가산함.
	소회의장	495 원	
전시장		830 원	1일 평당 사용료임.

* 초과 사용료 가산 (계속 사용 계약시 그 중간시간은 제외)

ㅇ. 30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20%

ㅇ. 30분이상 1시간미만 초과 : 당해 사용료의 50%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립 가축위생시험소 재수수료징수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 1700호

서울특별시립가축위생시험소재수수료 징수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립 가축위생시험소 재수수료 징수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 재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01호

서울특별시보건연구소재수수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 재수수료징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 재수수료 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시험연구에 관한 재수수료 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 보건연구소에"를 "서울특별시 종합기술연구소에 보건연구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종합기술시험연구소장은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82호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사편찬을 위한 사료의 수집, 조사와 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약간명의 고문과 위원중에서 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부시장과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장과 소속공무원 및 서울특별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 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사의 편찬, 발간 및 사료의 조사연구
2. 시사발간을 위한 시정홍보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
3. 시정 각분야의 자료수집 및 체계적 정리보존

제 4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되 부시장, 위촉직 부위원장의 순으로 한다.

제 5조(연구원 및 보조원) ①위원회에 시사편찬을 위한 사료의 수집조사와 연구에 필요한 연구원과 보조원을 둘 수 있다.

②제 1항의 연구원은 지방 전문직 공무원으로 하고 보조원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 6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업무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서기는 기획관리계장이 된다.

제 7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사편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8조(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회의출석 및 시사편찬 업무와 관련되는 연구활동에 필요

한 수당과 여비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연구원 및 보조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상주인구조사 시행조례 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년 11월 25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03호

서울특별시 상주인구조사 시행조례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상주인구조사 시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상주인구의 지역별 변동과 연령구조를 정확히 조사 파악하여 시정계획의 기본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상주인구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구"라 함은 거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모임을 말하며, 이에는 일반가구와 집단가구로 구분하며 일반가구는 2인 이상 가구와 단독가구로 세분한다.
2. "일반가구"라 함은 가구주를 중심으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끼리 모여사는 2인이상의 가구와 한사람만의 독립적으로 자신의 취사, 취침 및 생계를 유지하는 단독가구를 말하며, "집단가구"라 함은 혈연관계를 갖지 않는 여러사람이 한데모여 가구의 형태를 유지하며 살고있는 가구를 말한다.
3. "가구주"라 함은 제1호의 가구의 생계를 사실상 주관하고 책임을 지며, 가구원이 대표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4. "가구원"이라 함은 가구를 이루는 개개인을 말한다.
5. "상주인구"라 함은 조사기준일을 중심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거주한 기간, 거주하려는 기간, 또는 이를 통산한 기간이 3월 이상이 되는 자를 말하며 상시 거주하는 자와 부재중인 상주자로 구분한다.
6. "부재중인 상주자"라 함은 구치소, 교도소, 소년원의 재소자와 군인중 영내 거주자 및 해외에 공무로 파견된 자를 말한다.
7. "신고의무자"라 함은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의 가구주 또는 가구원중에서 조사원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조사의 범위 및 대상) ①이 조사는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역에 걸쳐 조사한다. 다만,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다음 지역의 거주자는 부재중인 상주자로서 본가에서 조사한다.

가. 국군, 유엔군, 전투경찰대의 주둔지 및 기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이나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의 유치장

②조사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전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및 일반외국인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되 다음의 자는 제외한다.

가. 외국군인, 군속 및 그 가족
나. 외교관, 국제연합 및 외국정부의 공무로 체재중인 공무수행자와 그 가족
다. 외국인으로서 거주기간을 불문하고 운동경기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중인자

제4조(조사기준 시점) 이 조사는 매년 10월 1일 0시 현재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조사한다.

제5조(조사항목) ①이 조사는 기본항목으로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가. 가구주 성명
나. 가구구분
다. 연령 및 성별인구

②제1항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을 추가할 때에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사표) 이 조사는 제5조에 규정한 조사항목에 따라 제작된 별지 서식의 조사표에 의한다.

제7조(조사방법) ①이 조사는 조사원이 매가구를 방문하여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표에 기입한다.

②조사원은 신고의무자로 부터 답

변 또는 신고된 자료를 검토 확인하고 가구주의 날인을 받는다.

제8조 (신고의 의무) ①가구주는 제5조에 규정한 조사항목에 대하 조사원에게 답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②가구주가 부재중일 때에는 조사원이 지정한 가구원이 대리로 답변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 이 조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소속 직원중에서 조사지도원과 조사원을 지정한다.

제10조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의 교육) 시장은 조사지도원 및 조사원에 대하여 조사 시행전에 이 조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조사의 공고) 시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기준일 1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조사일시 및 기간
2. 조사사항
3. 조사지역 및 조사원

제12조 (조사서류의 제출) ①동장은 관내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집계 및 내용검토를 완료하여 동 집계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동에 보관하고, 2부는 조사표와 함께 10월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내동의 집계를 최종 집계 및 내용 검토하고 종합하여 구 집계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보관하고, 2부는 동집계표 1부와 조사표를 첨부하여 10월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조사결과의 공표) ①조사의 결과는 매년11월21일까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기획원장관에게 공표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이 조사의 결과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12월31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할 때까지 이를 공개할 수 없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시행한날로부터 시행한다.

통계법 제3조 (통계작성의 승인) 지정통계 또는 일반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그 통계작성에 관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통계결과의 공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를 작성한 기관의장은 지체없이 그 통계표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한후 그 통계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기획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통계법시행령 제2조 (지정기관의 범위)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관은 특별법에 의한 법인과 정부가 자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기업체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국가의 인구사회 또는 경제에 관한 정책수립에 관련되는 통계를 작성하는 기관으로써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9조 (통계결과의 공표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결과의 공표는 관보 기타 간행물에 하여야 한다.

작성기간 : 서울특별시
승인번호 : 201-11-01

통계법 제8조(비밀의 보호) 통계조사 과정에서 알려진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제9조(통계 목적이외의 사용금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통계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상주인구조사표

서울특별시 구 동 통 반(대중 대)

														계
거처번호														
가구번호														
가구주성명														
가구의 구분	일반가구	2인이상가구												
		단독가구(1인)												
	집단가구													
총계		계	( )	( )	( )	( )	( )	( )	( )	( )	( )	( )	( )	
		남	( )	( )	( )	( )	( )	( )	( )	( )	( )	( )	( )	
		여	( )	( )	( )	( )	( )	( )	( )	( )	( )	( )	( )	
성별및연령계급별인구	0	남/여												
	1	남/여												
	2	남/여												
	3~29	남/여												
	30~85 이상 소계	남/여												
가구주날인란														

(주)총계란( )에는 부재상주자 인구를 기입할 것.
총계에서 부재상주자를 포함할 것.

조사원 성명 | 동사무소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2 년 11 월 26 일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조례제 1704 호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2의 1, 3, 3의 1 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별도 1,2,3,4,5 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의기 및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사용하던 대의기 의용소방대 표지 및 복제는 1983 년 12월31 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별표 1〉 의용소방대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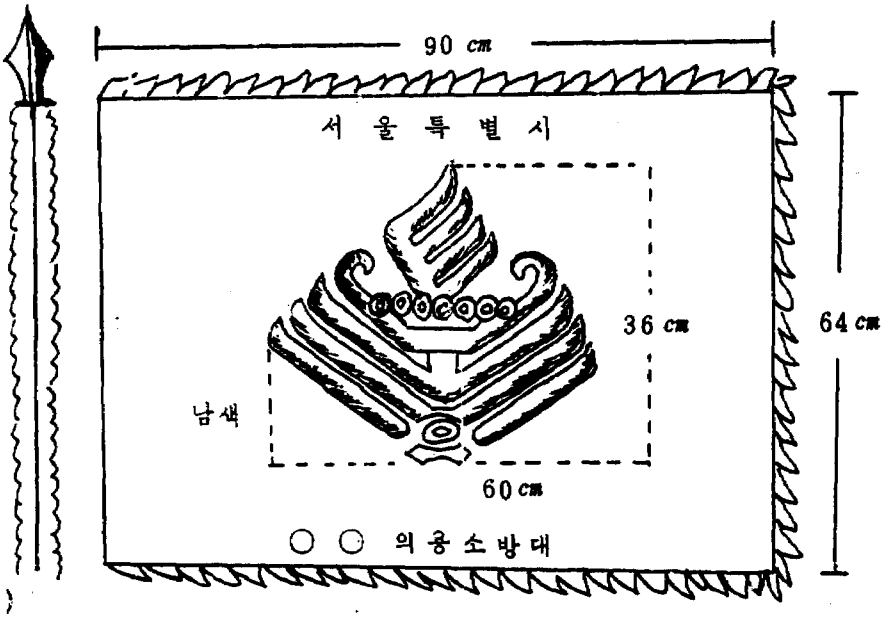

(제식)

1. 깃봉은 은색도금한 금속제로서 3각 유봉으로 한다.

2. 깃폭은 가로 90 cm, 세로 64 cm

3. 감은 2중면적 또는 후랏드지
4. 색 : 남색
5. 휘장 : 기 중앙에 의용소방대 간부의 모장형과 동일의 휘장을 배열한다.
6. 깃 : 황색면사교연 (1 cm)
7. 술 : 황색면선사교연 (12 cm)
8. 깃대길이 : 150 cm 흑색칠
9. 대명 : 깃면 상부에 가로, 세로 약 8 cm 크기의 글자로 소속명을 배열한다. 다만 문자의 간격은 깃면을 중심으로 보기좋게 배열한다.

〈별표 2〉

의용소방대업무분장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총무부	서무반	1. 대의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2.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대원의 연락 및 소집에 관한 사항 4. 기타 타부, 반의 업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
	보급반	1. 대의 경리 및 조달에 관한 사항 2. 대의 장비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방호부	소화반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에 관한 사항 2. 소방수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구조반	1. 주민의 대피 및 구조에 관한 사항
지도부	예방반	1. 대의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주민지도계몽에 관한 사항
	훈련반	1. 대의 훈련에 관한 사항

〈별표 3 〉

부 녀 대 업 무 분 장

부 명	반 명	분 장 사 무
홍 보 부	서 무 반	1 . 대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 대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 3 . 대원의 연락 및 소집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홍 보 반	1 . 관할구역내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사항 2 . 불조심 및 의용소방대운영에 따른 홍보활동 3 . 소방업무에 관한 주민지도 및 계몽에 관한 사항
구 호 부	구 호 반	1 . 화재현장 부상자처리에 대한 지원활동 2 . 이재민 위안활동

<별표 4>

목 체

표 지 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감	○ 바탕흑색 양복지 ○ 계급표시는 금시사 ○ 휫불은 니켈금속지	좌 동	<별도 1> (개)계급장 (1)대장 (2)부대장및 지대장 (3)부장 (4)반장 (5)대원
계	정		1. 대 장 크기는 가로 87 ㎜ 세로 38 ㎜로서 계급장 중앙한변이 15 ㎜ 대각선 18 ㎜의 휫불을 배열하고 폭 6 ㎜, 길이 38 ㎜의 금색선을 1.5 ㎜간격으로 양편에 각각 4선을 배열하며 견장형식으로 제작한다.	1. 반 장 크기, 휫불의 위치, 금색선의 크기는 대장과 동일하고 금색선을 양편에 각각 1개를 배열하며 견장형식으로 제작한다.	
급	제		2. 부대장 및 지대장 크기휫불, 금색선의 크기는 대장과 동일하고 금색선을 2 ㎜간격으로 양편에 각각 3선을 배열하며 견장형식으로 제작한다.	2. 대 원 금색선은 없으며 크기, 휫불의 위치는 대장과 동일하며 견장형식으로 제작한다.	
견	장		3. 부 장 크기, 휫불, 금색선의 크기는 대장과 동일하며 4 ㎜간격으로 양편에 각각 2선을 배열하며 견장형식으로 제작한다.		
		식			

표 지 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약장	감	정장과 동일	정장과 동일	(나)금장
		제식	정장과 동일	정장과 동일	
금장	금장	감	금색금속지	부장이상과 동일	
		제식	세로 1.2 ㎝, 가로 2.5㎝ 크게 단형으로 우편에 "서울" 좌편에 "의소"의 문자를 횡서로 양각한다.	부장이상과 동일	
소방모	점모	감	1. 카바 동모는 흑갈색모, 구렛바지, 하모는 흑색 비닐지 2. 전비와 턱끈은 흑색 비닐지 3. 주름은 흑색견직지	부장이상과 동일	
		제식	1. 그자의 천정은 타원형으로 하고 둘레에 철사를 넣어 팽팽하게 한다. 2. 모자테의 주위외면에는 넓이 4㎝의 주름을 두르고 내면에는 비닐땀받이를 붙인다. 3. 모자테의 전반부에는 금색금속자로 짠 넓이 1.2㎝의 때로만든 턱끈식 금선을 후반부에는 넓이 1.5㎝의 턱끈을 두르고 양끝에 귀단추를 한다.	부장이상과 동일 모자테의 전반부에 턱끈만 두른다	<별도 2> 소방모 (가)정모

소 방 모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소방모	작업모	감	국방색 나이론직지	부장이상과 동일	(내) 작업모
		제식	원형의 운동모 모양으로 한다.	부장이상과 동일	
	방수모	감	흑색강화프라스틱	부장이상과 동일	(다) 방수모
		제식	1. 헬멧의 형은 한골형으로 한다. 2. 헬멧의 외부도장은 방화페인트로 3회이상 소부한다.	부장이상과 동일	
모장	정장	감	ㅇ바탕은 흑색양복지 ㅇ물, 횃불, 봉사정신표시는 자수	니켈금속지	(라) 모장
		제식	크기는 넓이 70㎜, 높이 50㎜의 마름모형으로 "횃불"의 상징은 적색, 물의 상징은 황색, 봉사정신의 상징은 백색으로 볼륨있게 자수한다.	크기 및 형태는 부장이상과 동일하나 니켈금속으로 볼륨있게 도금한다.	
	약장	감	정장과 동일	정장과 동일	
		제식	형태는 정장과 동일하나 정장의 2/3 크기로 제작한다.	좌 동	
제 복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정복	상의	감	동복은 흑감색 모구렛바 또는 양복지, 하복은 쥐색모포라 또는 양복지	부장이상과 동일	

제복					
구분			부장이상	반장이하	도형
정복의	상의	제식	1. 벌림깃의 전면중앙에 한줄4개의 단추를 단다. 2. 등판은 중앙봉합선 하단을 설개한다. 3. 흉부와 복부각 좌우에 동복은 속붙임, 하복은 겉붙임의 두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를 단다. 4. 어깨에 견장지를 붙이고 견장단추를 단다. 5. 하복은 뒤허리부분에 넓이 5㎝의 띠를 붙인다.	부장이상과 동일 다만 동복은 껴움깃으로 하고 한줄5개의 단추를 단다.	<별도3> 제복 (가) 동정복상의 (1) 부장이상 (2) 반장이하 (나) 하정복상의 (1) 전면 (2) 후면
		간식	상의와 같이한다.	부장이상과 동일	
정복의	하의	제식	1. 긴바지로 한다. 2. 전면 우측에 옆으로 속붙임 작은주머니와 좌우측면에 각각 길이의 속붙임 주머니를 1개씩 붙인다.	부장이상과 동일	
작업복	상의	간식	국방색 목면직지	부장이상과 동일	(다) 작업복 (1) 상의
		제식	1. 노타이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전면 중앙에 한줄 5개의 단추를 단다.	부장이상과 동일	

제복					
구분			부장이상	반장이하	도형
			2. 전소매로 하고 흉부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단추를 단다.		
작업복	하의	감	상의와 같이한다.	부장이상과 동일	(2)하의
		제식	정복의 하의와 같이한다. 좌우와 후면좌우에 겉붙임 주머니를 붙인다.	부장이상과 동일	1 전면 2 후면
방수복	방수복	감	흑색 면포지 (이면에 방수처리한것)	부장이상과 동일	
		제식	1. 길이는 뒷굽으로부터 약2.5㎝ 띄우도록한다. 2. 소매길이는 손목관절로부터 3㎝ 길게한다. 3. 골덴지 꺽음깃에 흉부 및 배부에 방수고무지를 덧붙이고 전면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인다. 4. 소매끝 내부에 약10㎝의 모직 소매줄림을 붙인다. 5. 전면에 고리단추 5개를 한줄로 단다.	부장이상과 동일	방수복 (1) 전면 2) 후면

비 고

1. 정복상의의 저면 중앙단추의 배열간격은 최하단 단추가 허리띠버클 하부에 위치하도록 간격을 조정 배열한다.

2. 단추는 다음표에 의한 단추를 사용한다.

구분 / 복별	소방단추			꽃단추		비고
	대	중	소	중	소	
정복		0				
작업복					0	
주머니단추 (정복)			0			상의
견장단추			0			
모자단추			0			
하의단추					0	

소 방 화

구분			부장이상	반장이하	도형
소방화	단화	감	흑색복수지(피혁)	부장이상과 동일	〈별도 4〉 (가) 소방화 (1) 단화 (2) 방수화
		제식	부장식간화로 한다	〃	
	방수화	감	천연및 합성고무 또는 이의 혼합물	〃	
		제식	1. 길이는 약 85 센티미터 대퇴부까지 올라오게 하고 2. 바닥속은 천판을 넣으며 3. 상부로부터 약 50 센티미터는 메리야스에 고무를 입힌 고무판을 안으로 붙인다 4. 상단 바깥부분에 허리띠에 연결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의 고리끈을 단다.	〃	

부　　속　　물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부속물	단추	금속제식	ㅇ니켈 금속지	부장이상과 동일	〈별도 5〉 (가) 부속물 1) 단추
			1. 직경 22 밀리미터(소형 16 밀리미터) 높이 4 밀리미터(소형 3 밀리미터) 반구형으로 가장자리 높이를 1 밀리미터의 로프형으로 하고 그 안에 직경 12 밀리미터(소형 8 밀리미터)로 "횃불"을 양각한다. 2. 저면의 중앙에 직경 2.5 밀리미터(소형 2 밀리미터)의 고리를 단다.	〃	
	넥타이	감	ㅇ동복용은 흑색, 하복용은 쥐색모직지	해당없음	2) 넥타이핀
		제식	ㅇ넥타이핀은 니켈 도금한 금속지 ㅇ일반용 넥타이와 같다 ㅇ넥타이핀은 각변이 12 밀리미터 대각선이 15 밀리미터의 형태로 넥타이핀 형식으로 제작한다.	해당없음	
	허리띠	감	1. 버클은 니켈금속지 2. 허리띠는 동복은 흑색, 하복은 쥐색목면직지	부장이상과 동일	3) 허리띠 버클
		제식	1. 버클 새로 37 밀리미터, 가로 53	〃	

부 속 물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부 속 물	허리띠	제식	밀리미터 니켈버클로 중앙의 한 면이 12 밀리미터 대각선이 15 밀리미터 "횃불"을 양각한다. 2. 허리띠 너비 3.2 센티미터 두께 0.4 센티미터의 적당한 길이로 하고 끝에 1.5 센티미터의 철판을 안밖으로 붙인다.		

〈 별표 5 〉

복 제 (부녀대원)

표 지 장					
구 분			부 장 이 상	반 장 이 하	도 형
계급장	약장	감	남자대원과 동일	좌 동	
		제식	〃	〃	
소방모	작업모	감	〃	〃	
		제식	〃	〃	
보장	약장	감	〃	〃	
		제식	〃	〃	
			제	복	
제복	작업모	감	여자소방관 제복과 동일	좌 동	
		제식	〃	〃	

〈별도 1〉

(가) 계급장(단위 : 밀리미터)

(1) 대장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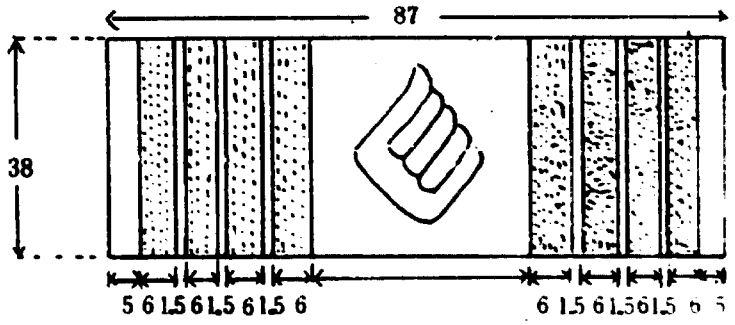

(2) 부대장및
지대장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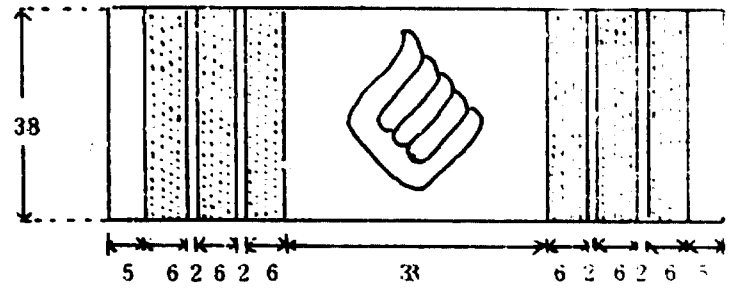

(3) 부장의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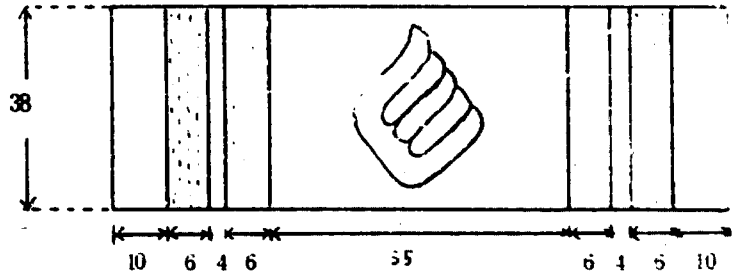

(4) 반장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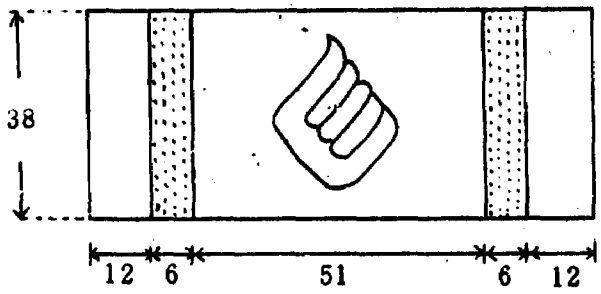

(5) 대원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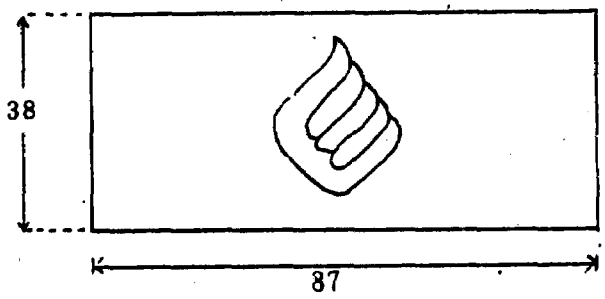

※ 단위 : 미리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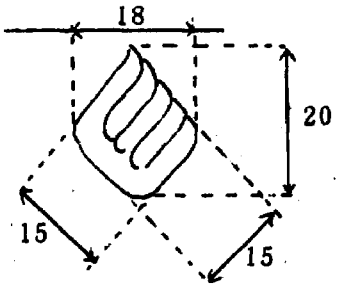

(나) 금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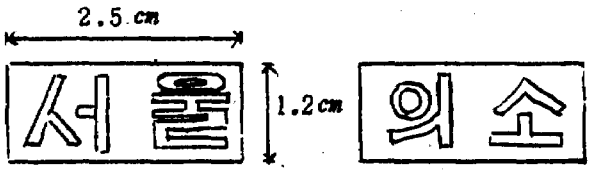

〈별도2〉 소 방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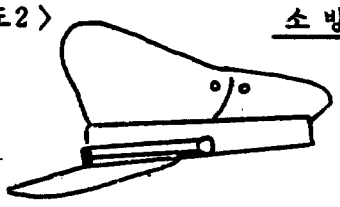

(가) 정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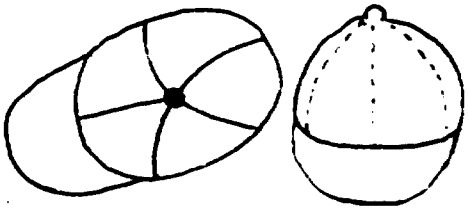

(나) 작업모

(다) 방수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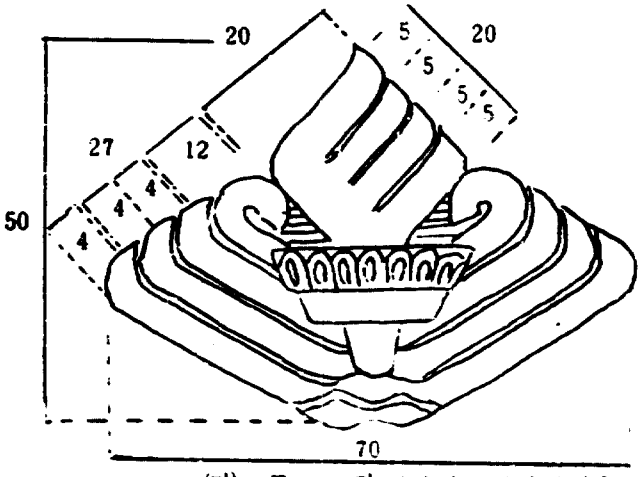

(라) 모 장 (단위 : 미리미터)

〈별도3〉 제 복

(가) 동정복 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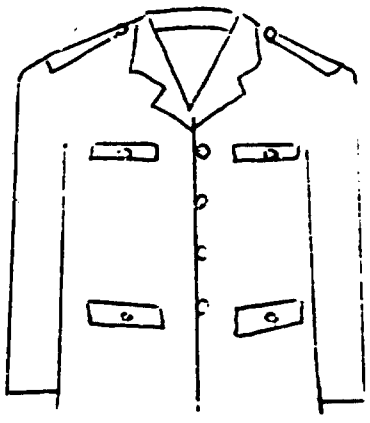

(1) 부장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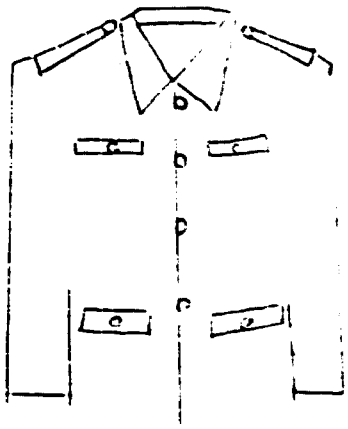

(2) 반장이하

(나) 하정복상의

(1)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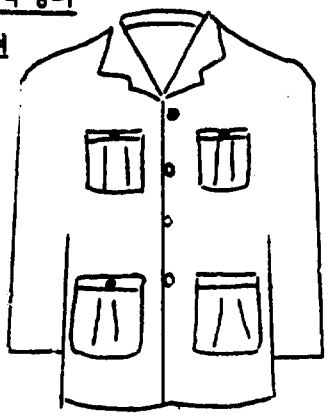

(2)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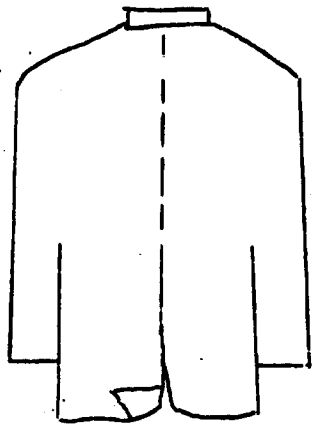

(대) 작업복

(1) 상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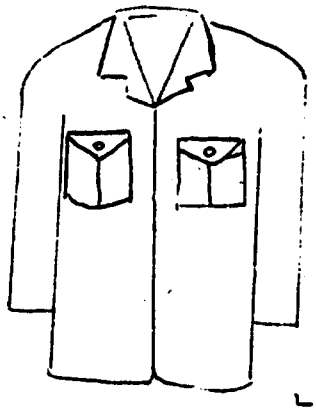

(2) 하 의

ㄱ.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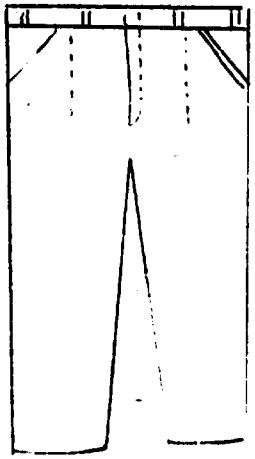

ㄴ. 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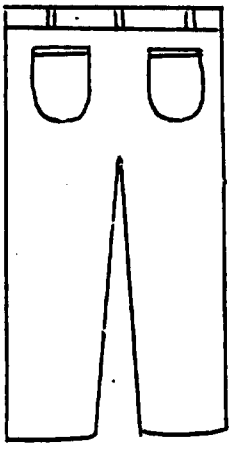

(라) 방수복

(1) 전 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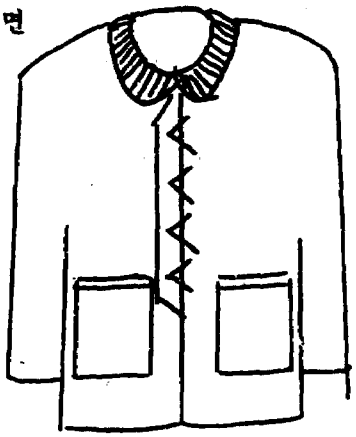

(2)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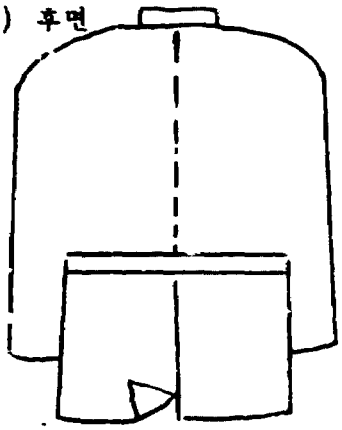

〈 별도 4 〉 소방화

(1) 단 화

(2) 방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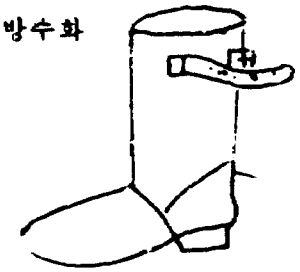

〈 별도 5 〉

부속물 (단위 : 미리미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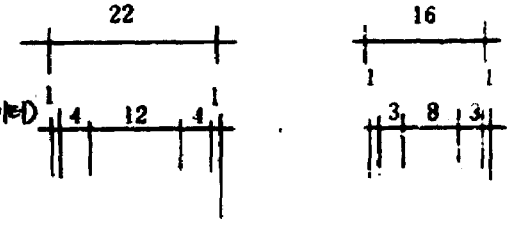

(1) 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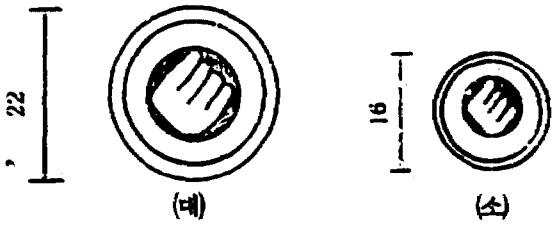

(대) (소)

(2) 넥타이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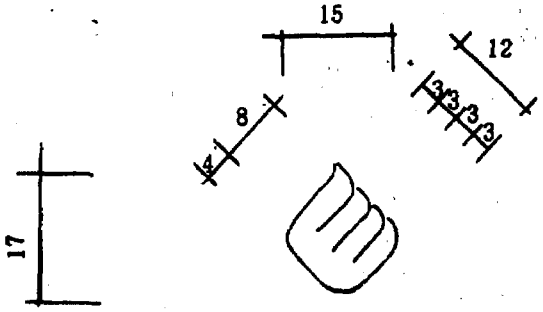

※ 넥타이 핀 형식으로 제작

(3) 허리띠
(박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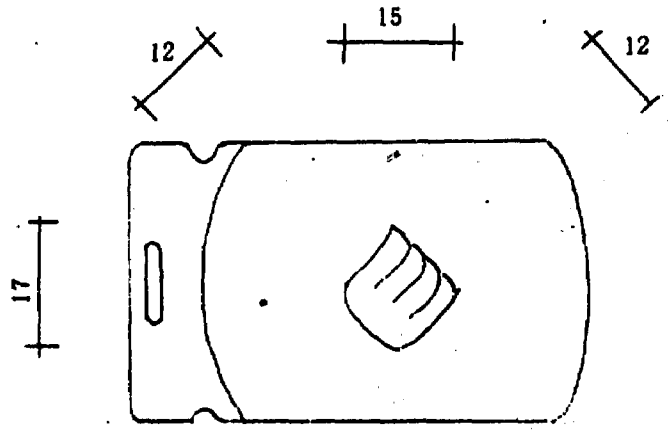

※ 기존의 형과 동일형식으로 하나 중앙의 불꽃은 양각한다.

훈　　령

서울특별시 종합자료실 운영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11.26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서울특별시훈령제 584 호

서울특별시종합자료실운영 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종합자료실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기능) 자료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정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2. 시정연구 자료의 제공
3. 시정연구실 활용
4. 기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조 제 3 항중 "분기별"을 "월별"로 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열람자의 범위) ①자료실이용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2. 타 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직원
3. 대학(교)의 연구 조교 이상의자
4. 기타 시정개발담당관이 인정하는 자

②제 1 항의 제 2 호, 제 3 호 및 제 4 호 해당자는 별지 제 1 호 서식에 의한 출입자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 7 조 제 8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 조(열람) 자료의 열람은 자료실 내에 한하며 발행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열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 8 조(대출) ①자료의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하나 서울특별시 공무원에 한하여 대출할 수 있다. 이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출은 다음과 같이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정개발담당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1 회 대출권수 : 3 권이내
2. 대출기간 1 회 7 일이내

③기 대출된 대출자료의 반납이 있기전에는 자료를 대출하지 아니한다.

④다음 각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한다.

1. 대외비 이상 보안을 유지하여야할 자료
2. 회귀자료
3. 정책자료
4. 기타 성질상 대출이 적합하지 않은 자료

⑤대출한 자료는 필요에 따라 기한전이라도 그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9 조(자료반납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료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별지 제 3 호 서식의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

1. 대출기한 경과후 3 일이내에 반납치 않을 때에는 제 1 차 독촉을 한다.
2. 제 1 차 독촉후 3 일이내에 반납치 않을 때에는 제 2 차 독촉을 한다.
3. 제 2 차 독촉후 3 일이내에 반납치 않을때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 14 조에 의거 처리한다.

제 10 조 "(준수사항)"을 "(열람자 준수사항)"으로 한다.

제 1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2 조(자료점검) 소장 자료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년 1 회 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별지 1 호"를 "별지 4 호"로한다

제 15 조와 제 16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15 조(폐기) 소장 자료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정개발담당관 결정으로 폐기 처분할 수 있다.

1. 정보가치의 저락으로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
2.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보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된 자료
4. 분실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
5. 자료점검결과 자연말실로 인정된 자료
6. 기타 시정개발담당관이 폐기하기로 결정한 자료

제 16 조(제적) 폐기처분된 자료는 제적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1 호서식)

출 입 자 대 장

일련번호	출입일자	성 명	소 속	직 위	전 화 번 호
					(자 택)
					(사무실)
					(자 택)
					(사무실)
					(자 택)
					(사무실)
					(자 택)
					(사무실)
					(자 택)
					(사무실)

(제 2 호서식)

(전면)

대 출 신 청 서

대출카드상의 자료를 확실히 대출받고 대출기한을 엄수하겠으며, 분실 파손등으로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현품 또는 실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변상하겠음.

19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후면)

독 촉 잠 발 부

공 무 원 대 출 카 - 드

신분증번호	

소속		직위		성명		발부일자	

확인			분류번호	등록번호	서명	차붕자인	대출일자		반납내일자		반납인
과장	사시	계									

서울특별시 종합자료실

68-46 표 536호 A1 표 1982.11.17

(제 3 호서식)

관 인 생 략

19 년 월 일

귀하

대출도서반납촉구 (제 차)

19 년 월 일자 귀하에게 대출한 다음 자료는 19 년 월 일로서 그 반납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납되지 않아 열람사무에 지장이 많으므로 이에 (제 차) 독촉하오니 오는 월 일까지 반드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번호	도서기호	자 료 명	수 량	비 고

서 울 특 별 시 장

(제 4 호서식)

자 료 변 상 통 지 서

변상자			분실자료			변상액	비고
소속	직	성명	자료명	발행년도	저자명		

금전으로 변상할 때에는 19 . . .까지 변상액을 납부하여야 함.

19 . .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자 료 변 상 통 지 서 수 령 증

변상액			분실자료			변상액	비고
소속	직	성명	자료명	발행년도	저자명		

자료변상통지서를 정히 수령하며 변상기간 내에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종합자료실 운영규정 제 14 조의 규정에 의거 변상자 봉급에서 공제하여도 이의 없읍니다.

소속 직 성명

봉급담당자 : 소속 직 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울특별시 보고통제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2.11.26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훈령제 585 호

서울특별시보고통제규정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보고통제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중 "시행규칙"을 "보고통제 규정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한다)"로 하고 제 8 조제 1 항 및제 3 항, 제 16 조 제 1 항중 "보고통제 규정 시행규칙"을 "규칙"으로 한다.

제 5 조중 "총무과장"을 "기획감사 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471 호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6 호 ('82. 5.14)와 동고시 제 310 호 ('82. 8.10)로 변경 결정 및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379 호 ('82.10.22)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다음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11.22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학교)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설	학 교	한남동산 10-83일대	14.744	

나. 도시계획시설(도로)조서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소로	3	6	60	한남동산 10-83	한남동산 10-43	
변경	〃	〃	〃	〃	〃	〃	폐지
신설	〃	〃	〃	85	한강로 3가 40-504	한강로 3가 40-504	

o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472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11. 23.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건설사업
2. 사업주체
   영등포구여의도동 1-620
   삼성종합건설(주) 대표 조주목
3. 사업시행지의위치및면적규모
   가. 위치 : 영등포구신길동 4759 번지
   나. 면적 : 15,890 ㎡
   다. 규모 : 아파트 12층 2동
   384세대
   상가 2층 1동와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82.12.1~84.4.30.

◎서울특별시고시제473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 지정변경

1. 건설부고시 제398호(79.11.7)로 아파트지구 지적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1호(81. 1. 27)로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된 강동구 명일동 산25의 4외 217필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변경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주택기획과) 및 강동구청(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3.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변경내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 업 시 행 자	용산구한강로 3 가 65-228 (주) 삼익공영 대표 이 종 복	용산구한강로 3 가 65-228 (주) 삼익주택 대표 이 종 록	81. 7. 31 자 (주) 삼익공영이 (주) 삼익주택에 흡수합병됨.
사업위치	강동구명일동산 25-4 외 217 필지	좌 동	
면 적	235,680 ㎡		
사업시행 기 간	81. 3 ~ 83. 12. 31		

나. 관계도서열람기간 :
1982.11.23-1982.11.30 (7 일간)

다. 열람장소
서울특별시건설관리국 (주택기획과)
강동구청 (시민봉사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3.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고시제474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50 호 (82. 2. 3) 로 도시계획시설 (학교) 이 결정되고 동고시 제 126 호 (82.3.27) 로 지적공시 승인된 도시계획시설 (학교)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379 호(82. 10.22) 및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1) 사업의시행지
성동구화양동 12 번지 2 호

2)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화양국민학교 신축

3) 사업의규모
o대　　지 : 5,583.8 ㎡ (1,690.8평)
o연 면 적 : 2,940.75 ㎡ (　889평)
o건축면적 : 825.75 ㎡ (　294.5평)

4) 사업시행자주소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착수및준공예정일
가. 착수 : 시행허가후 3 개월이내
나. 준공 : 착공일로부터 2 년이내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별첨)
7)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설계도서 (별첨)

◎서울특별시고시제475호

도시계획시설 (시장) 결정및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시설 (시장, 백화점)을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379호 (82.10.22) 및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4.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계획시설 (시장 : 백화점) 결정 및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비 고
신설	소매시장 (백화점)	강동구성내동 57-3일대	2,109	지하2층, 옥탑2층, 지상5층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476호

도시계획시설 (수도) 변경결정

1.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수도)을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건설부고시 제379호 (82.10.22)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4.
서 울 특 별 시 장

○변경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수도 (가압장)	은평구갈현동 391-43 외 1	304.5	
변 경	〃	〃 〃 391-5 일대	642.1	증 337.6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77 호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결정

1 . 당시관내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12 조 및 건설부고시 제 379 호 (82.10.22) 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 6 조의 권한의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1.

서 울 특 별 시 장

가 . 결정조서

구 분	시 설 명	위 치	면적(㎡)
신 설	운동장 (수영장)	마포구성산동산 11 의 1 일대	21,569.87

o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478 호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및변경

1 . 서울특별시관내 도시계획시설 (도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및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17.

서 울 특 별 시 장

o 시설조사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기점	종점	비고
신 설	중로	3	191	12	400	도림동 270	도림동 172	
"	소로	2		8	160	신길동 312 의 23	신길동 294 의 2	
"	"	3		6	60	" 295 의 7	" 361 의 2	
기 정	"	3		4	10	" 190	" 140	
변 경	"	"		"	20	" 190	" 190	노선변경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 장 (m)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로	2		8	952	사당동 323 의 1	사당동산 22 의 2	
변 경	〃	〃		〃	1040	〃	〃 175 의 35	위치변경및 노선연장
기 정	〃	〃		〃	85	공덕동 426 의 19	공덕동 257 의 2	
변 경	〃	1		10	〃	〃	〃	폭원확장

o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479호

비료생산업허가사항변경고시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생산업 허가사항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11.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허가번호 : 제 1 - 1 호
2. 허가년월일 : 76. 8. 11.
   76. 11. 11.
   79. 6. 18.
3. 성 명 : 임 철 수
4. 주 소
   서울시마포구서교동 377 - 4
5. 사업장소재지
   서울시도봉구방학동 7
6. 상 호 : 서울미원주식회사
7. 변경일자 : 1982. 11. 25.
8. 변경내용 : (별 첨)

o 변경내용

변 경 전 내 용

비료의종류및품목	보증성분량		기타의규격	생산능력	상 표
	유효성분량	유해성분량			
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 (액)	-	-	-	(년 간) 100,000 톤	미원유기질액비
〃 (박)	질소전량 10 % 이상	-	염분농도 10 % 이하	(년 간) 12 만톤	미원유기질비료 2 호
조미료 (박)	-	-	-	(년간) 12만톤	미원유기질비료1호

변　　경　　후　　내　　용

비료의종별및품목	보증성분량		기타의규격	생산능력	상　　표
	유효성분량	유해성분량			
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액)	-	-	-	(년 간) 10 만톤	미원유기질비
아미노산 발효 부산비료(박)	질소, 인산 가리, 전량의 합계량 5 %	-	염분농도 10 %이하	(년 간) 12 만톤	미원유기질비료

◎서울특별시고시제48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2. 11. 25.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중구서소문동 85 의 3
3. 사업시행지의 [illegible], 면적 [illegible] 규모
   가. 위 [illegible]
      강남구청담동 [illegible] 6 [illegible]
      • 삼성동 53-2 [illegible]
   나. 건설규모
      아파트 15 층 7 동 530 세대
      상 가 2, 3 층
      2 동의 부대복리시설
   다. 대지면적 : 51,[illegible]5.2 ㎡
   라. 건축연면적 : 99,369.15 ㎡
4. 사업시행기간
   1982.11. . ~ 1984. 6.30.
5. 도시계획시설(도로) [illegible] 협의 조서

가. 시설변경내역

구분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세　　지	중로	3	12㎜ 160㎜	강남구 청담동 75	강남구 청담동 75	

구 분	등급	류별	폭원	연 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로	3	6 m	230 m	강남구청담동 65	강남구청담동 65	
변 경	〃	2	9 m	230 m	〃 〃 65	〃 〃 65	
기 정	〃	3	6 m	135 m	〃 삼성동 55-1	〃 삼성동 55-1	
변 경	〃	3	6 m	125 m	〃 〃 55-1	〃 〃 55-1	
폐 지	〃	3	6 m	63 m	〃 청담동 74	〃 청담동 74	

◎서울특별시고시제481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

서울특별시고시 제 166 호 (77. 5. 30) 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 및 지적고시된 성북구 성북동 168-275 번지외 2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 6 조 및 건설부고시 제 379 호 (82.10.23)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 [illegible] (학교) 시행 허가하였기 이를 고시 [illegible]

1982. 11. 26.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성북동 168-275 외 2 필지

나 사업의종류및명칭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

다. 사업의면적및규모
1) 면적 : 46,693 ㎡
2) 규모 : 건축면적 731.8 ㎡
지상 1 ~ 5 층, 옥탑
연면적 2,714.9 ㎡
구조 철근콘크리트라멘조

라. 사업시행자주소성명
성북구성북동 168-275
학교법인 동구학원 이사장 김정옥

마. 착공및준공예정일
1) 착 공 일
허가일로부터 1 개월이내
2)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1 년

바. 사용할 토지
별첨 (토지조서 생략)

사. 위치및계획평면도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482호

도시계획사업 (백화점)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 319 호 (82.8. 14)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백화점) 시행허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 및 사업계획은 영등포구청 산업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6.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시행의 위치
   영등포구영등포동 434-2 일대
2.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3. 사업의규모및면적
   1) 규모 : 지하 3 층, 지상 7 층
   2) 면적
      대지 - 3,535 ㎡ (1,069.3 평)
      면적 - 15,735 ㎡ (4,759.8 평)
4.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중구충무로 1 가 52-5
   주식회사 신세계백화점

대조이사 [illegible]

5. 사업의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년월일 : 1982.12.15
   나. 준공예정일 : 1983.12.30
6. 위치및제한경면도 : 별첨(도면생략)
7. 공사설계도면 및 사업계획
   별첨(도면생략)
8. 사업계획은 영등포구청 산업과, 도면은 시민봉사실에 보관함.

◎서울특별시고시제483호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

1. 서울특별시고시 제176호(82.11.24)로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결정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379호(82.11.22)의 권한의임무정에 따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illegible]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7.

서 울 특 별 시 장

o 도시계획시설(수도)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수도(가압장)	은평구갈현동 391-43 의 1	304.5	
변경	〃	〃 〃 391-5 일대	642.1	증 337.6

o 별첨 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484호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부천시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9.

서 울 특 별 시 장

○ 시설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중로	2	223	15m	920m	원종동대2-40	원종동대3-83	
〃	〃	〃	224	〃	1.160m	〃 중2-223	고강동대3-84	
〃	〃	〃	225	〃	1.043m	〃 대2-40	작동 대2-36	

○ 별첨도면표시와 같음(도면생략)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478호

K.S표시정지처분공고

공업표준화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표시 정지처분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1982. 10. 22.

서 울 특 별 시 장

다 음

허가번호	제881호, 제885호, 제887호 및 제1521호
업체명	애경유지공업(주)
소재지	서울특별시구로구구로동501
규격번호 및 품명 (종류, 등급)	KSM5310 합성수지 에멜젼 페인트(1급) KSM5317 조합페인트 (백색) KSM5320 합성수지 에멜젼 페인트(1급) KSM5321 합성수지 조합 페인트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처분사유	K.S규격 기준 미달

◎서울특별시공고제 478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당시에서 시행중에 있는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의규정에 의거 환지계획변경 수립하고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도서를 당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서 14일간 일반에게 보인다.
2. 동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시는 공람 기간내 당시에 의견을 제출하시고 본 공고는 토지소유자에게 별도 서면 송달될 것이다. 미수령되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이 공고를 가름한다.

1982. 11. 22.
서 울 특 별 시 장

(환지계획 변경내역)
가. 사 업 명 : 영동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면적 : 16,000평
다. 변경위치 : 강남구 서초동 산152-5호 일대.

◎서울특별시공고제 480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파트 2-4주구) 환지예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변경사유가 있어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에게 보인다.
2. 환지계획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2.
서 울 특 별 시 장

(변 경 내 역)
가. 사 업 명 : 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위치 : 영동2지구 아파트2-4주구일부
다. 변경면적 : 2,539.80 평

◎서울특별시공고제 483 호

환지계획일부변경공람공고

1. 영동1지구 [illegible]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예정지중 일부토지에 대하여 변경 사유가 있어 환지계획을 변경코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14일간 일반에게 공람한다.
2. 환지계획변경 관계도서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드리고 [illegible] 있을 경우 공람 [illegible]

출하여 주시기 바람.

1982. 11. 25
서 울 특 별 시 장

(변 경 내 역)

가. 사 업 명 : 영동1지구 추가 토지구획정리사업

나. 변경위치 : 방배동405.404 부터 내 산102-12외11필지

다. 변경면적 : 1,577.7평 (도면생략)

◎서울특별시공고제 484호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업소행정조치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 특정 열사용 기자재 시공업 지정업소에 대하여 행정조치하였음을 동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다.

1982. 11. 27.
서 울 특 별 시 장

지정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사 유	조 치	관계법규
구로 35	우진설비	박병욱	시흥동 472-29	기준미달	영업정지 6개월 (기간 82.11. 25-83.5.24)	제30조 제1항

◎서울특별시공고제 485호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기간연기)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에서 시행중인 잠실, 강동, 영동1, 2 및 1지구추가, 신당, 청량리, 장안평, 경인, 김포지구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변경 (기간연기) 하고자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14일간 보인다.

2. 관계도서는 도시계획국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개별 통지는 아니하고 본 공고로 갈음한다.

1982. 11. 26.
서 울 특 별 시 장

(사 업 계 획 변 경 내 역)

지 구 명	인 가 면 적	시 행 자	사업시행인가 기 정	사업시행인가 변 경	비 고
잠 실 지 구	11,222,492㎡	서울특별시장	74.12.6 82.12.31	74.12. 6 84.12.31	[illegible]장
강 동 지 구	363,636〃	〃	81. 4.10 82.12.31	81. 4.10 83.12.31	1 〃
영동1 〃	12,737,831〃	〃	68. 1.18 82.12.31	[illegible]. 1.18 84.12.31	2 〃
영동2 〃	13,071,856〃	〃	71. 8.24 82.12.31	71. 8.24 [illegible].2.31	[illegible]
영동1지구 (추가)	869,815〃	〃	72.12.28 82.12.31	[illegible].12.28 [illegible].12.31	[illegible]
신 당 지 구	1,519,299〃 중 218,181〃	〃	40.10.21 82.12.31	[illegible].10.21 83.12.31	[illegible]
청량리지구	1,100,182〃 중 122,314〃	〃	40.10.21 82.12.31	[illegible].10.21 [illegible].2.31	[illegible] 〃
장안평 〃	1,940,638〃	〃	76.11.20 82.12.31	76.11.20 83.12.31	[illegible] 〃
경 인 〃	7,313,629〃	〃	68. 1.18 82.12.31	[illegible]. 1.18 81.12.31	2 〃
김 포 〃	4,706,334〃	〃	68. 1.23 82. 2.31	[illegible]. 1.23 81.12.31	2 〃

(도면생략)

◎지방공사강남병원공고제 2 호

공사설립등기공고

1982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립 강남병원을 지방공사 강남병원으로 설립함에 따라 당병원 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설립 등기를 필하고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한다.

1982. 11. 17.

지방공사 강남병원장

1. 등기번호 : 제 4 호
2. 명 칭 : 지방공사 강남병원
3. 사 무 소 : 서울특별시강남구삼성동 291-1
4. 설립인가년월일 : 1982.8.7.
5. 목 적

강남병원공사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사 강남병원 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와 의학연구를 통하여 시민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고 의학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사업을 행한다.

가. 진료사업
나.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다. 의학연구 (임상연구 포함)
라. 시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
마.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위 각항의 부대되는 사업일체

6. 자본금 : 150 억원
7. 출자의방법 : 전액 서울특별시 출자
8. 출자납입금액 : 4,004,587,821 원
9. 병원장 : 신 현 탁
10. 이 사 : 김 학 영
고 경 용
11. 감 사 : 이 용 욱
12. 등기일 : 1982.11.17

사 령

◎ 1982 년 11 월 7 일자 령제 586 호

상 하 수 국
지 방 행 정 주 사 차 일 환

업무과 근무를 명함.

도 시 계 획 과
지 방 행 정 주 사 권 대 경

시설계획과 근무를 명함.

건 설 관 리 국
지 방 행 정 주 사 보 최 경 규

건설행정과 근무를 명함.

◎ 1982 년 11 월 19 일자 령제590 호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라 종 웅	시점개발담당관	기획관리실	지방행정주사
안 덕 희	통계전산담당관	〃	〃
임 상 덕	법무담당관	〃	〃
홍 중 기	보건위생과	보건사회국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백 위 준	농 축 과	산업경제국	지방행정주사
조 만 형	주택기획과	건설관리국	〃
이 성 문	운수 2 과	교 통 국	〃
남 정 록	인 사 과	내 무 국	〃
소 순 곤	통제전산담당관	기획관리실	지방행정주사보
황 대 성	〃	〃	〃
김 태 두	시점개발담당관	〃	〃
안 용 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국	〃
권 주 칠	지하철도과	교 통 국	〃
임 종 남	건설행정과	건설관리국	〃
서 창 곤	인 사 과	내 무 국	지방행정서기
허 수 영	〃	〃	〃
허 숙	도 로 과	건설관리국건설행정[illegible]	지방행정주사

◎ 1982 년 11 월 23 일자 령 602 호

주택계량과 재방토목기좌	김 창 영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재개발과 재개발계획계장		
종합기술시험연구소 재방토목기좌	이 재 명	복지을 명합
주택계량과 계량 1 계장		4 호봉을 급합

◎ 1982 년 11 월 22 일자 [illegible]

◎ 1982 년 11 월 23 일자 [illegible]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허 만 섭	감사담당관감사 1 계장	감사담당관감사 2 계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수 철	〃 감사 2 계장	〃 감사 4 계장	〃
신 인 선	〃 감사 3 계장	교통기획과교통시설계장	〃
신 동 우	〃 감사 4 계장	투자관리담당관경영분석계장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김 상 돈	투자관리담당관경영분석계장	내 무 국	지방행정사무관
손 동 수	의전과의전 1 계장	의전과의전 2 계장	〃
박 성 훈	〃 의전 2 계장	관광과관광진흥계장	〃
조 광 권	행정과행정계장	도시계획과도시행정계장	〃
박 명 현	새마을지도과새마을사업계장	내 무 국	〃
윤 길 찬	문화과문화계장	운수 2 과지도계장	〃
양 승 주	〃 문화재계장	상공과공정계장	〃
박 도 용	종합민원실민원 1 반장	건설행정과건설행정계장	〃
윤 철 환	재정기획과재정총괄계장	하수과하수행정계장	〃
이 상 윤	회계과계약계장	연료과석탄계장	〃
최 준 길	〃 회계심사계장	은평구재무과장	〃
김 상 하	세정과심사계장	강남구건설관리과장	〃
김 용 준	세무지도과과징 1 계장	청소과청소행정계장	〃
마 영 수	〃 과징 2 계장	마포구산업과장	〃
김 진 경	〃 조사계장	복지과의료보험계장	〃
박 광 식	관재과재산처분계장	서대문구총무과장	〃
차 정 욱	보건위생과보건위생계장	종합민원실민원 1 반장	〃
정 진 섭	복지과의료보험계장	회계과계약계장	〃
김 철 곤	상공과공정계장	비상계획과동원계장	〃
윤 종 각	〃 표준계장	세정과심사계장	〃
감 태 상	연료과석탄계장	구로구총무과장	〃
황 용 학	〃 열관리계장	세무지도과조사계장	〃
옥 유 영	도시계획과도시행정계장	의전과의전 1 계장	〃
김 진 국	건설행정과건설행정계장	행정과행정계장	〃
정 재 완	건축지도과건축행정계장	교통기획과교통기획계장	〃
노 홍 균	주택개량과개량계획계장	도봉구총무과장	〃
박 지 병	청소과청소행정계장	중구총무과장	〃
김 광 시	교통기획과교통기획계장	교통기획과주차시설계장	〃
김 한 영	〃 교통시설계장	내 무 국	〃
정 태 복	〃 주차시설계장	주택개량과개량계획계장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일성	관광과관광진흥계장	문화과문화계계장	지방행정사무관
정진극	하수과하수행정계장	재정기획과계정총괄계장	〃
김동규	비상계획과동원계장직대	공무원교육원전형실장	행정사무관
김완일	공무원교육원	영등포구기획감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재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관리과장	관악구세무1과장	〃
김동수	내 무 국	상공과표순계장	〃
강영호	운수2과지도계장	동작구총무과장	〃
김재성	동부병원서무과장	서울대공원관리과장	〃
이주로	정신병원 〃	서대문구시민봉사실장	〃
조재호	종 로 구	보건위생과보건행정계장	〃
선병순	〃	서대문구기획감사과장	〃
고완기	〃	마포구세마을과장	〃
이철우	중 구	종로구총무과장	〃
조규필	용 산 구	관악구시민봉사실장	〃
윤정중	성 동 구	문화과문화계장	〃
김경열	〃	동대문구기획감사과장	〃
강수웅	〃	강남구재무과장	〃
정태산	〃	강동구위생과장	〃
장수암	동 대 문 구	성동구청소과장	〃
윤영원	〃	도봉구주택과장	〃
김호진	〃	강동구산업과장	〃
최종호	성 북 구	내 무 국	〃
김경기	〃	종로구시민봉사실장	〃
안현용	〃	도봉구위생과장	〃
이춘상	〃	〃 건설관리과장	〃
강병섭	도 봉 구	관재과재산처분계장	〃
이동식	〃	세무지도과과진2계장	〃
이규상	〃	성동구세무2과장	〃
강신일	〃	동대문구건설관리과장	〃
윤영노	〃	성북구시민봉사실장	〃

성 명	발 령 사 . 항	현 부 서	직 급
황병철	은 평 구	종로구수도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형순	〃	강동구주택과장	〃
이유종	〃	내 무 국	〃
전장하	서 대 문 구	감사담당관감사3계장	〃
양석용	〃	영등포구총무과장	〃
김춘기	〃	마포구위생과장	〃
이재식	〃	동부병원서무과장	〃
이법운	〃	장묘사업소장	〃
한 송	마 포 구	은평구세무1과장	〃
이풍우	〃	적십병원서무과장	〃
이균표	〃	서대문구세무1과장	〃
임형식	〃	강서구시민봉사실장	〃
형영우	〃	〃 민방위과장	〃
이만재	〃	〃 수도관리과장	〃
신태영	〃	서대문구민방위과장	〃
최영태	강 서 구	성동구총무과장	〃
김병희	〃	은평구위생과장	〃
배동승	〃	마포구수도관리과장	〃
윤 필	〃	관악구건설관리과장	〃
이균우	구 로 구	연료과열관리계장	〃
홍법식	영 등 포 구	건축지도과건축행정계장	〃
문엽승	〃	마포구세무2과장	〃
장철수	〃	강서구사회복지과장	〃
김주억	동 작 구	강남구세무1과장	〃
유치삼	관 악 구	성북구건설관리과장	〃
이세희	〃	마포구 〃	〃
윤순화	〃	영등포구청소과장	〃
장기완	강 남 구	세무지도과과징1계장	〃
김병관	〃	성동구재무과장	〃
맹온철	〃	성북구총무과장	〃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이정원	강 남 구	회계과 회계심사계장	지방행정사무관
김덕수	〃	마포구세무1과장	〃
김용외	강 동 구	올림픽준비기획단	〃
이정열	〃	용산구산업과장	〃
임광빈	〃	동대문구시민봉사실장	〃
한외섭	〃	성북구환경과장	〃
황상하	〃	강남구위생과장	〃

◎ 1982년 11월 23일자　　령제 607 호

중　　구
지방행정사무관　　최 승 용

1982.7.19자 해임처분을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결정(사건82-269 : 82.10.6)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함.
복직을 명함.
장묘사업소장에 보함.

◎ 1982년 11월 24일자　　령제 606 호

종합기술[illegible]구소
[illegible]
지방별정직8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illegible]함.

◎ 1982년 11월 25일자　　[illegible]

성 명	발 령 사 항		현 부 서	직 급
	부 서	직 급		
염정섭	동대문구	지방행정서기	동대문구주택과	[illegible]
신윤재	〃	행정서기	〃 산업과	지방행정서기
문학주	〃	지적기원보	〃 도시정비과	지방지적기원보

◎ 1982 년 11 월 25 일자 령제 611 호

서 대 문 병 원 김 명 숙
지방별정직 7 급상당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령제 612 호

감 사 담 당 관 김 문 종
서 기 관

지하철운영사업소장직무대리

◎ 1982 년 12 월 1 일자 령제 613 호

관 악 구 임 헌 철
지방행정서기

관악구 지방건축기원

◎ 1982 년 11 월 26 일자 령제 614 호

동대문구산업과 신 태 식
행정주사보

81.12.31 자 해임처분을 서울고등법원판결 (사건 82 구 209 : 82.11.11) 에 의하여 동일자로 취소함.

o 정정 (시보기재사항)

발행일자	호수	정정사항
82.11.11	988	82.11.11 자 발행 제 398 호를 제 938 호로 정정
82.11.11	938	P 51-53 서울특별시고시 제 468 호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고시중 고시일자 1982.11.18 일자를 1982.11.13 일자로 정정

◎ 서울특별시고시제 471-1호

도시계획시설(학교)변경결정및 지적승인

1. 당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조 7조2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및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내 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 11. 22

서 울 특 별 시 장

o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당초	변경후	증감	
변경	학교	강동구마천동 72 일대	10,986㎡ (3,324평)	9,675㎡ (2,926평)	감 : 48㎡(15평) 면적정정 감 : 1,265㎡ (383평)	면적정정 : 구적착오로 인함.